

출 및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임교수의 허가와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전과 및 전공 변경은 소속 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개정 2022. 1. 26.>

- ② 전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6.>

제18조(휴학)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 또는 복무휴학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 ②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장기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근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장기질병 또는 해외·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하되, 휴학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휴학기간은 제24조제3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제20조(복학) ①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학생의 등록금 등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3.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0(B⁰) 미만인 학생
4.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제23조(재입학) ① 자퇴한 사람이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입학원 접수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의 정원 외 입학 전형에 따른다.
- ④ 대학원위원회는 각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제8조(배점)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의 배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2절 학적관리

제9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10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 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